

대학 직무발명 보상금 비과세제도에 대한 제언

나동규^{1*}

¹홍익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Suggestions for the Non-Taxation Scheme on the Compensation for Employee Invention of the University

Dong-Kyu Na^{1*}

¹College of Law, Graduate School, Hongik University

요 약 대학으로부터 교직원에게 지급되는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은 어떤 종류의 소득으로 정의되는지에 따라 과세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비과세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정부는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법을 제정하여 대학에서 생산된 기술을 산업계로 이전하여, 연구생산성을 높이고 산학 간 협력을 증진시키려는 노력을 해 오고 있다. 그러나 정부부처간의 법 해석의 차이로 인해 대학이 교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한 과세의 혼선이 초래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대학의 직무발명 보상금 비과세제도를 둘러싼 부처 간의 갈등과정을 법해석의 차원에서 고찰하고, 비과세제도의 집행효과를 개인소득세 감면의 차원에서 분석한 후, 이를 근거로 제도의 정착을 위해 정부에 대한 제언을 직무발명 보상금의 제도 개선 차원에서 도출하였다.

Abstract The compensation for employee invention from the university can be taxed or non-taxed depending on the classification of the type of income. The government legislated the Promotion of Industrial Education and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Act and the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Promotion Act in order to improve the research productivity of universities and industrial-academic collaboration via transferring the technologies. However, the confusion with taxation on the compensation of employee invention from the university has been incurred due to the difference of legal interpretation between government bureaus. In this research, bureaucratic conflict on the non-taxation scheme is examined in a legal aspect and the effect of non-taxation scheme is also studied in aspect to personal tax exemption. Finally, some suggestions are provided for the purpose of settlement of the non-taxation scheme in order to improve employee invention from the university.

Key Words : Compensation, Employee invention, Income, Tax exemption, University

1. 서론

기업이 종업원에게 직무발명의 대가로 지급하는 보상금에 대한 비과세제도는 1979년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1980년부터 시행되었다[1]. 2008년 1월 1일 이전 소득세

법에는 기타소득으로 종업원의 직무와 관련된 우수발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받은 보상금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종업원이라 함은 피사용자로 법인의 임원이나 공무원이 포함되며, 대학의 교직원도 당연히 포함된다.

본 논문은 2013학년도 홍익대학교 학술연구진흥비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 Dong-Kyu Na(Hongik Univ.)

Tel: +82-2-320-1813 email: dna@hongik.ac.kr

Received September 23, 2013 Revised (1st October 21, 2013, 2nd October 28, 2013)

Accepted November 7, 2013

그러나 이전 소득세법이 현행 소득세법으로 개정되는 과정에서 비과세대상이 되는 직무발명 보상금의 범위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할 세무서의 해석도 서로 달라 그간 대학들(산학협력단들)은 각자 다른 방식으로 기술이전 보상금에 대한 과세문제를 처리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 즉, 이전된 기술의 특허출원이나 특허등록 상태 또는 이전된 기술의 종류(특허 기술 또는 노하우 기술)에 따라 대학들이 과세와 비과세를 각자 결정하여 처리하였다.

이러한 혼돈은 2011년 8월 감사원이 기술료 성과급의 비과세는 잘못되었다고 각 지역 세무서에 과세를 지시하면서 대학을 탈세자로 몰고 가는 바람에 더욱 가중되었다[2]. 설상가상으로 국세청은 대학의 산학협력단이 정부 출연연구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그 성과물에 대해 소속대학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소득-11)[3]과 (소득-62)[4])까지 내렸다.

이러한 일들의 연장선상에서 국세청은 무리하게 과세를 추진하다가 정부부처 간 기술료 성과급의 세금징수에 대한 의견도 통일되지 않은 상태에서 납세자로부터 행정소송을 제기 당하였고, 2013년 4월 25일 이 행정소송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5]. 이번 조세심판원의 결정으로 지금까지 감사원의 지적으로 혼돈 속에서 과세하던 세무서와 납세자들 사이에서 비과세의 내용이 어느 정도 정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의 교직원이 소속대학의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수령한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요건에 대하여 2013년 4월 25일자로 조세심판원이 결정한 조심2012전2623을 중심으로 고찰하여 본다. 구체적으로 정부관련 부처가 어떻게 법적해석을 달리하여 상호갈등을 벌였는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조세심판원에 의해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규명한다. 그리고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한 비과세제도의 집행으로 인한 대학으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한 교직원의 개인소득세 감면의 효과를 확인하고, 제도의 정착을 위해 정부에 대한 제언을 직무발명 보상금 제도 개선의 차원에서 도출한다.

2. 제도에 관한 부처 간 갈등

2.1 감사원의 감사[5]

2011년 8월에 감사원은 국세청에 대한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발명자 등에게 지급되는 기술료 보상금은 발명진흥법의 직무발명 보상금과 그 성격이 다르므로 과세대상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해석하였다. 비영리연구기관인 대학이나 정부출연기관이 연구개발과제의 결과물을 기업체 등에게 실시를 허용하는 대가로 기술료를 징수하고, 교직원이나 참여연구원들에게 지급한 기술료 성과급 등은 발명진흥법 상의 직무발명 보상금에 해당되지 않고, 근로소득에 해당된다고 지적하였다. 이를 근거로 감사원은 국세청으로 하여금 대학 및 출연연구소들이 이전까지 비과세로 처리한 부분을 과세하도록 처분하였다.

2.2 관할 세무서의 결정[5]

국세청은 감사원장의 확인 및 조치 통보에 따라 각 지역 세무서를 통해, 관할 대학에 기술료 성과급 지급 내역에 대하여 과세현황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제출의 요구는 전국의 대학에 2013년 상반기까지 계속되었으며, 그 중에서 절차의 진행이 빨랐던 청구법인의 경우 지역 세무서로부터 대학이 제출한 2006년에서 2010년 사이에 발생한 귀속 기술료 성과급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한다는 수정신고 안내문을 받았다. 이에 대학의 청구법인은 세무서의 수정신고 결정에 불복하여 2012년 5월 31일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3 청구법인의 주장 및 국세청의 의견

2.3.1 청구법인의 주장[5]

기술료 성과급은 발명진흥법 상의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소득세」 제12조 제5호 라목의 비과세 대상이다. 「발명진흥법」 제15조에 의한 직무발명 보상금이란 종업원 등이 직무발명을 사용자 등에게 승계시킨 것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지급된 금원이다.

청구법인이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 보상금의 대상이 되는 발명은 특허권 등록 여부에 한정할 수는 없다. 발명이 특허등록이 된 이후에는 그 등록된 특허권리는 「발명진흥법」 제2조 제4호에서는 산업재산권으로 정의되고 있고, 「특허법」 제2조 제2호에서는 특허발명으로 각각 정의되고 있는 바와 같이, (직무)발명의 정의와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의되고 있다. 따라서 직무발명이 특허등록을 받아야만 발명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기술료는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에 해당되는 비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였다.

2.3.2 국세청의 의견[5]

비영리연구기관에서 정부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수행한 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국가 또는 연구기관 등에 귀속된다. 지급된 기술료 성과급의 경우 실질적으로 비영리기관의 매출(수입)에 기여한 바에

대한 인센티브 성격의 금원이며, 연구개발 결과물에서 기술료가 발생하면 지급하는 것이므로 그 지급 여부는 연구개발 결과물의 특허 관련성과는 무관하다. 더욱이 발명자인 교직원인 특허권 등을 학교(산학협력단)에게 승계하는 대신 지급받는 직무발명 보상금과는 그 성격이 다르므로 기술료 성과급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2.4 조세심판원의 결정[5]

국세청은 산학협력단인 청구법인이 교직원에게 지급한 기술료가 소득세법 상 비과세가 아닌 과세대상인 기타소득이라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그러나 대학의 교직원이 소속대학에 설치된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2008. 1. 1. 이후 지급받는 보상금은 비과세 대상으로 보도록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가 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었다.

따라서 기술료 중 청구법인이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으로 등록된 권리의 허여 등을 통하여 기업으로부터 수령한 수입금액 중 발명자인 교직원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에 따른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국세청이 기술료 모두를 과세 대상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기타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3. 세법상 대학의 직무발명 보상금

3.1 특허권리 된 기술의 이전 시 보상금

교직원이 발명한 특허권리 된 기술의 이전 시 대학이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 보상금의 종류로는 등록 보상금, 실시 보상금 그리고 처분 보상금이 있다. 등록 보상금은 출원한 직무발명이 등록되는 경우 지급되는 보상금을 말한다. 실시 보상금은 기술이전 보상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특허권리된 직무발명이 전용실시권이나 통상실시권의 형태로 기술이전 되는 경우,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과 각 대학의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금이다. 처분 보상금은 특허권리된 직무발명의 기술을 매각하였을 때 지급하는 보상금을 지칭한다. 출원된 특허의 등록시 지급하는 등록 보상금은 일반적이지 않으나, 실시 보상금과 처분 보상금은 거의 모든 대학에서 지급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에는 기타소득 중에서 비과세소득에 해당되는 항목들을 정의하고 있는데, 라목에

서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의 대가로 받는 보상금 중에서,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대학의 교직원이 받는 직무발명 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있다. 즉, 교직원이 종업원의 지위로 대학의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는 직무발명 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으로써 과세되지 않는다.

여기서, 대학의 산학협력단이 지급하는 직무발명 보상금 중에서 특허 등록이 수반된 등록 보상금, 등록된 특허 기술을 이전하여 대학이 수령하는 기술료의 일부를 수령하는 실시 보상금, 그리고 등록된 특허 기술을 매각하여 대학이 수령하는 판매금액의 일부를 수령하는 처분 보상금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의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데 문제가 없다. 이는 보상금의 지급에 있어서 등록된 특허권리가 수반되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조세심판원(조심2012전2623)의 결정[5]으로 이에 대한 논쟁의 여지가 확실하게 정리되었다.

3.2 특허출원 중인 기술의 이전 시 보상금

교직원이 발명한 기술이 특허출원 된 상태에서, 아직 특허청에서 심사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기술이전 된 경우에 대학(산학협력단)이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 보상금에는 출원 보상금, 실시 보상금 그리고 처분 보상금이 있다. 출원 보상금은 대학의 산학협력단이 교직원의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산학협력단의 명의로 출원하였을 때 지불하는 보상금이다. 등록 보상금과 마찬가지로, 실시 보상금이나 처분 보상금과 비교하면 일반적이지 않다.

직무발명이 특허권리 되기도 전에 기술이전 되는 이유는 기술사업화의 시기와 깊은 관련이 있다. 기술을 기초로 하는 기술사업화의 성공여부는 기술실시의 시기에 크게 의존하므로 기술의 종류에 따라 특허등록 되어 권리화 되기 전에 기술이전 되기도 한다. 따라서 대학은 실시 보상금과 처분 보상금의 경우에는 특허출원 중인 기술에 대하여 지불하기도 한다.

기획재정부는 이와 관련하여 2002년 12월 30일 유권 해석(소득세제과46073-181)[6]을 통해 종업원 등의 직무와 관련된 발명 등이 특허 출원중이거나 출원 심사결과 특허등록 되지 않은 경우에, 사용자 등이 동 직무관련 발명 등과 관련하여 종업원 등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의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고시한 바 있다. 다시 말해, 교직원이 직무발명으로 특허출원을 한 경우 수령하는 출원 보상금이나, 등록된 특허가 수반되지 않는 기술이전 또는 기술 매각 시 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이 아니고 과세대상으

로 분류된다는 것이다. 즉, 아직 특허권리화 되지 않은 특허출원 된 직무발명의 기술이전에 따라 교직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인 출원 보상금, 실시 보상금 그리고 처분 보상금은 교직원의 업무성격에 따라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과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여기서 근로소득과 과세 기타소득의 구분은 교직원의 주요 업무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만일 교직원의 주요 업무가 발명인 경우에는 지급 받는 보상금의 성격이 근로소득의 범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대학의 교직원 중에서 발명이 주 업무인 대학의 종업원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보상금은 과세대상의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된다.

기획재정부는 유권해석의 판단기준은 소득의 원천으로 특허등록 된 권리가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과세와 비과세의 기준으로 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동일한 맥락에서 유권해석에서도 언급되었지만 직무발명이 특허출원하여 특허청에서 출원 심사결과 특허등록 되지 않은 경우에도 지급받은 직무발명 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않고 과세 대상의 기타소득에 해당된다.

3.3 노하우 발명의 기술의 이전 시 보상금

대학의 직무발명 보상금에는 출원 보상금, 등록 보상금, 실시 보상금 그리고 처분 보상금 이외에 노하우 보상금이 있다. 노하우란 권리화 되지 않는 기술로 기술 경쟁의 유력한 수단이 될 수 있는 정보나 경험 따위의 비밀 기술정보를 지칭한다. 노하우 발명의 기술이전이란 기술이 개발되었으나, 타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기술정보를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노하우 기술이전은 특허출원 기술이나 특허등록 기술과 달리 비공개를 전제로 양도되거나 실시권이 허용된다.

대학에서 개발되는 많은 기술들 중에서 모든 기술이 특허출원 될 수 없고, 특허등록 되지도 못한다. 교직원에 의하여 개발된 기술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특허출원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한 상태에서 기술이 이전되는 경우 노하우 형태로 기술이 이전될 수 있다. 또한, 특허 출원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특허명세서에 기술의 모든 부분을 다 기술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방법특허의 경우 공정변수들에 대하여 타인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특허명세서에 공개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에 노하우 발명의 기술이전의 필요성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서 특허출원이 되어 특허등록이 된 기술을 제외하고는 여러 개의 관련 노하우 기술이 산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듯이 대학에서 개발되는 기술이 노하우 상태로 이전 되는 상황은 피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노하우 발명의 기술이전 시 지급하는 직무발명 보상금의 경우도, 특허출원 중인 기술이전의 경우와 동일하게 근로소득이나 과세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즉, 등록된 특허가 수반되지 않는 노하우 발명의 기술이전 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이 아닌 과세대상의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이 된다.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는 노하우 발명의 기술이전에 대한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노하우 발명 역시 특허등록 된 특허권리가 기술이전 시 수반되지 않으므로, 지급된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의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4. 대학의 직무발명 보상금의 규모와 비과세 효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6항에는 기술이전 수입료의 사용용도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는데, 그 사용용도로 1. 연구자에 대한 보상금, 2. 연구개발, 3. 기술이전·사업화, 4. 지적재산권의 출원·등록 및 관련 업무, 5. 전담조직의 운영 그리고 6.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는 같은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6항에서 1. 기술이전·사업화와 관련하여 외부기관과 공동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데에 드는 비용, 2. 기술이전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정의하고 있다. 산학협력단에서 대학의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연구자 보상과 대학 기여자보상으로 나눌 수 있는데, 연구자 보상의 경우는 직접 연구에 참여한 교직원에게 지급되는 것이고, 기여자 보상의 경우 기술이전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교직원에게 지급되는 것이다.

대학의 산학협력단들이 기술이전에 따라 수령하는 기술료(수입료)와 세부 배분현황을 Table 1에 제시하였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기술이전 수입료 배분현황은 한국연구재단이 2012년 발간한 ‘2010 대학산학협력백서 [7]’에서 조사한 연도별 기술이전 수입료 배분현황의 표를 재구성한 것이다. 2011년도의 기술이전 수입료 배분현황은 2013년 발간된 ‘2011 대학산학협력활동조사 보고서[8]’에서의 기술이전 수입료와 동 보고서에서 제시된 해당 년도의 기술이전 총 수입료 배분현황을 사용하여 계산하였다.

Table 1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기술이전 수입료는 2007년 164억원 정도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11년에는 479억원 정도로 조사되었다. 2011년도의 기술이전 수입료의 배분은 전체 기술이전 수입료인 479억7천8백만원

중에서 연구자 보상으로 55.1%(264억3천6백만원) 그리고 기여자 보상으로 1.7%(8억1천6백만원)이 지출되었다. 해마다 지불된 연구자 보상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기술이전 수입료의 증가와 더불어 같이 증가되었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연구자에게 지불하는 직무발명 보상금은 연구자가 개발한 기술을 이전하거나 사업화하여 얻은 기술료의 100분의 50 이상을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2008년부터 2011년까지는 전체 기술이전 수입료의 50%가 넘게 규정에 준하여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지불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07년의 경우에는 49.2%로 규정의 50%에 조금 미달되어 지불되었다.

대학의 기여자보상의 경우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제2항의 제2호에는 기술의 이전에 기여한 사람에게는 ‘연구자가 개발한 기술을 이전하거나 사업화하여 얻은 기술료의 100분의 10 이상’을 배분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전체적으로 10% 보다 현저히 낮음을 확인하였다. 기여자 보상 제도는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의 활성화되지 않은 기술이전 활동을 보다 촉진하기 위한 것이나, 기술이전의 기여에 대한 보상이 여전히 미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학의 산학협력단이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지급한 2011년의 264억3천6백만원의 보상금 전체를 과세대상의 기타소득으로 간주한다면 그 전체 세액은 11억6천만원 정도이다. 2011년 직무발명자 1인당 수령한 직무발명 보상금은 해당 년도의 총 직무발명 보상금(264억3천6백만원)을 기술이전 건수인 1,804건[8]으로 나누어 산출하였다. 기술이전 보상금은 모든 기술이전 건에서 동일하고 교직원들은 최대 1번의 기술이전을 하였다고 가정하였다.

계산된 직무발명자 1인당 보상금은 약 1,465만원 정도로 계산되었다.

기타소득세율은 기타소득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나머지 20%에 대하여 20%의 기타소득세율과 2%의 주민세를 대학이 원천징수 한다. 즉, 수령하는 직무발명 보상금의 4.4%를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한다. 기술이전 된 직무발명 기술 1건당 납부하여야 하는 기타소득세를 고려하면 1,465만원의 4.4%인 약 64만원의 기타소득세 납세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특허권리 된 직무발명의 보상금은 교직원인 발명자 개인별로 약 64만원의 세제혜택을 받는 것으로 산출된다.

Table 1에서 연도별 공제되는 세제혜택의 정도를 산출하였다. 계산을 위하여 2007년부터 2010년도의 총 기술이전 건수는 ‘2010 대학산학협력백서[7]’의 자료를 활용하여 추출하였다. 교직원 개인이 수령하는 직무발명 보상금의 규모가 큰 경우, 기타소득은 근로소득과 합산되어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이 되어 추가의 세액이 발생할 수도 있다.

만일 감사원의 감사 지적과 같이 기술이전 보상금을 근로소득으로 간주할 경우, 기술이전 보상금에 대한 소득세액은 교직원의 개인 별 연봉과 합산되어 근로소득세율에 따라 과세되기 때문에 획일적이지는 않지만 기타소득의 경우보다 훨씬 더 높게 과세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5. 결론

본 연구는 대학의 직무발명 보상금의 비과세제도를 둘러싼 부처 간의 갈등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이 내린 결정

[Table 1] Royalty income distribution of technology transfer by Universities and the amount of tax exemption effect, with respect to years [7,8]

	Royalty Income of Tech Transfer	Distribution (Unit : Million Won, %)		Non-taxation Effect (Unit : Million Won / Ten Thousand Won)	
		Compensation to Inventor	Compensation to Contributor	Total Tax Exemption	Individual Tax Exemption
2007	Amount	16,415	8,081	355.5	46.6
	%	-	(49.2%)	-	-
2008	Amount	27,752	15,090	663.9	53.3
	%	-	(54.4%)	-	-
2009	Amount	29,981	15,762	693.5	53.7
	%	-	(52.6%)	-	-
2010	Amount	37,820	19,795	870.9	59.6
	%	-	(52.3%)	-	-
2011	Amount	47,978	26,436	1163.1	64.4
	%	-	(55.1%)	-	-

을 확인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한 비과세제도의 집행으로 대학으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한 교직원의 개인소득세 감면의 효과를 확인하였다. 또한 이를 근거로 제도의 정착을 위해 정부에 대한 제언을 직무발명 보상금 제도 개선의 차원에서 도출하였다.

앞서 보았듯이 특허등록이 된 후 기술이전 된 직무발명의 경우,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2008년 1월 1일 이후 대학의 산학협력단이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 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된다. 더욱이, 보상금의 지급대상에 발명자는 물론 참여연구원, 심지어는 해당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지원인력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직무발명 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된다. 직무발명 보상금의 비과세 공제로 인한 직무발명 교직원 개인별 세액의 혜택은 2011년도에 약 64만원 정도로 조사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조세심판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대학이 산학협력단을 통해 지급하는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요건과 관련하여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거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문제가 여전히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세 가지로 구분하여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직무발명 된 기술이전과 관련하여 직무발명자는 비과세의 혜택을 위하여 기술이 특허등록 된 후 이전하려고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기술이전이 출원 후 특허등록 될 때까지 적어도 1년 반 이상 지연됨으로 기술의 활용시기가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또한 과세를 피하기 위하여 직무발명자는 특허 등록되기 전까지는 기술이전에 적극적이지 않을 것이고, 이는 궁극적으로 나라의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의 목적이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출원 중인 특허등록 되기 이전에 기술이전 된 직무발명의 경우에도 특허등록 되어 기술이전 된 직무발명과 동일하게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또는, 대안으로 특허출원 중인 기술의 이전 시 직무발명 보상금에 부과되는 과세 기타소득세와 관련하여 과세처리의 완화적인 방안을 적용할 수도 있다. 즉, 일단 세금을 부과하여 납부하도록 한 후, 해당 기술이전 된 특허기술이 등록되는 경우에 납부한 세액의 환급 처리를 해주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하다.

둘째, 연구개발 결과물에 특허기술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의 기술이전 수입이 특허기술과는 관련이 없는 연구개발 결과물의 기술이전에 따른 수입인

지, 연구개발 결과로 파생된 특허기술의 이전에 따른 수입인지에 대한 판단기준이 없다. 따라서 연구개발 결과물로 특허등록 된 기술이 존재하는 경우라도 과세와 비과세의 논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결국 이러한 논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기술이전 계약서에 특허권의 양도를 명기하여 기술이전의 수입이 (연구개발 결과물 그 자체의 기술이전에 따른 것이 아닌) 특허기술의 이전에 따른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

셋째, 특허권이 수반되지 않은 연구개발 결과물 그 자체의 기술이전의 경우 노하우의 기술이전의 형태가 되고, 이 경우에는 교직원이 수령한 직무발명 보상금은 비과세 대상 기타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그러나 대학 교직원의 연구는 일반적으로 연속적으로 진행되기에 단순히 기술이전 전과 기술이전 후를 잘라서 한정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 연구개발결과물에 특허권이 수반되지 않은 노하우 기술이전에 따른 보상금이라고 하더라도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의 대가로 받는 보상금임에 틀림없다. 연구생 산성을 높이고 산학의 협력을 증진시키려고,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법을 제정한 정부는 법의 취지에 맞게 노하우 기술이전에 대하여도 비과세와 같은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또는, 일정 기간을 정해 놓고 노하우의 기술이전 후라도 후행 연구개발로 관련된 기술이 개발되어 특허등록 되는 경우라면 기 납부한 세금의 환급처리를 해주는 방안도 대안으로 고려해 볼 만하다.

References

- [1] Min-Sun Noh, "Research of Reform on the Tax Supporting Policy for the Intellectual Property", *The Journal of Intellectual Property*, Vol.7, No.4, p. 126, 2012.
- [2] Eun-Nam Kwun, "Employee-Invention Compensation Tax Bomb", *Joongdo Ilibo*, 23 March, 2012.
- [3] National Tax Service, Authoritative Interpretation, Individual Income Tax Division-11, 5 January, 2012.
- [4] National Tax Service, Authoritative Interpretation, Individual Income Tax Division-62, 19 January, 2012.
- [5] Tax Tribunal, "Confirming whether the compensation of employee invention paid to faculty by University-Industry Foundation is one of the other incomes or not", JoSim2012Jun2623(Judgement Case), 25 April, 2013.

- [6]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Authoritative Interpretation, Individual Income Tax Division 46073-181, 30 December, 2002.
- [7] Seung-Jong Lee, *2010 White Paper of University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page 156,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2012.
- [8]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MEST), and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 *2011 Research Report on the Activities of University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pages 68, 72, Industry University Collaboration Division (MEST) and University-Industry Cooperation Promotion Team (NRF), 2013.

나 동 규(Dong-Kyu Na)

[정회원]



- 1988년 8월 : 연세대학교 대학원 금속공학과 (공학석사)
- 1997년 2월 : 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 재료공학과 (공학박사)
- 1997년 9월 ~ 2010년 1월 : 특허청 기술서기관
- 2013년 3월 ~ 현재 : 홍익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산업재산과 세법, 산업재산과 국가정책, 기술이전/사업화